

제67회 이사회 심의(토의)진행 회의록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2023. 12. 20.(수) 14:00 ~ 15:30 ○ 장 소: (재)안산문화재단 관리동 1층 회의실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 이성운, 이정숙, 고운기, 김영구, 김영애 민화식, 신영철, 장성희, 조성제, 차현주, 한규석, 한태섭 - 감 사: 이영분 - 배 석: 김종숙, 김동열, 황우자, 이권삼, 남영욱, 조형준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녕하십니까? 안산문화재단 기획감사실장 박혜정입니다. ○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금부터 안산문화재단 제67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산문화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2조 2항에 근거하여 안산문화재단 이사장을 대신하여 이성운 이사님께서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 먼저 이성운 이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녕하십니까?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운입니다. ○ 바쁜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오늘 심의 안건은 5건으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간사는 성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적이사 16분중 (12)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제67차 이사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보고 및 심의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지난 제66차 이사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이사회 회의자료 187쪽입니다. - 제66차 이사회는 2023년 10월 26일에 실시하였고, 10분의 이사님과 2분의 감사님이 참석하시어 - 예비비 편성(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 해 주셨습니다. ○ 다음은 제80차 인사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191쪽입니다. - 제80차 인사위원회는 2023년 11월 1일에 실시하였고, 재적위원 7분중 7분이 참석하시어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징계 심의 등 2건 심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이상으로 제66차 이사회와 제80차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 이사님들께서는 본 안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	○ 없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타 보고사항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접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접수안건은 심의 안건 5건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제2023-30호: 계약직원 관리규정 폐지 및 기간제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의안제2023-31호: 인사규정·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심의 건 - 의안제2023-32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강령(안) 심의 건 - 의안제2023-33호: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안) 심의 건 - 의안제2023-34호: (재)안산문화재단 비상임 선임직 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이 되겠습니다. ○ 의안 제2023-30호 ‘계약직원 관리규정 폐지 및 기간제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 제2023-30호 ‘계약직원 관리규정 폐지 및 기간제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본 안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 제2023-30호 ‘계약직원 관리규정 폐지 및 기간제 관리규정 일부개정 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5쪽입니다. ○ 계약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명칭 혼선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통합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계약직원 관리규정은 폐지하고 기간제 및 관리규정은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먼저 8쪽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부터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명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 1조 규정의 목적을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계약직 관리규정과 통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계약직원 관리규정으로 채용 및 운영되는 직원을 일반기간제근로자로 정의하고 그 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시기간제근로자로 정의 후, - 안 제5조 근로기간, 안 제7조 채용자격기준, 안 제11조 근로계약, 안 제 33조 보수, 안 제38조 근무성적 평정, 안 제39조 포상 및 징계, 별표 1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을 일반기간제근로자와 한시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 채용에서 접수 및 등록 시점에서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화하여 구분하였고, - 안 제8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재단의 인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 채용공고, 안 제10조 채용시험 및 안 제12조 채용자료보관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21조 복무, 안 제22조 근무시간, 안 제23조 지각, 조퇴,외출은 대표이사 직속부서 등 허가권자를 명시하여 개정하였고, - 안 제29조 특별유급휴가, 안 제30조 병가는 재단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별지 1호, 2호, 3호 서식을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서식으로 변경하였고, 별지 4호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 일부개정 규정안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21쪽, 관계법령은 35쪽, 현행규정은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4쪽 기간제관리규정 폐지안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폐지규정입니다. ○ 일부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	○ 없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 의안 제2023-30호 ‘계약직원 관리규정 폐지 및 기간제 관리규정 일부개정 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사들	○ 없습니다.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이성운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 제2023-30호 ‘계약직원 관리규정 폐지 및 기간제 관리규정 일부개정 심의건’ 이 원안가결 되었음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안 제2023-31호 ‘인사규정 및 임원 인사규정 일부개정 심의 건’ 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본 안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 제2023-31호 ‘인사규정 및 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 심의 건’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56쪽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안산시 감사관 종합감사 및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처분사항을 이행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먼저 56쪽 인사규정부터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4조 직원의 구분을 직제 및 정원 규정 제6조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 제2호 직권면직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 조항 오류로 제37조를 제38조로 수정하였으며, - 안 제11조 채용의 원칙은 지방출자출연법 문구 적용 및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산시 통합채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12조 특별채용은 경력채용으로 바꾸고 지방출자출연법 문구를 적용하였고, - 안 제14조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채용 연령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5조 직원의 결격사유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하였습니다. - 안 제17조 계약직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명칭을 수정하고, 계약 직관리규정 폐지 및 기간제관리규정 제명 변경에 따른 계약직관리규정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개정하고, - 안 제26조 및 안 제30조는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중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 요건에서 제외하였고,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승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32조의2, 32조의3, 32조의4 또한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휴직자 복무관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별표3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p>서약서 및 별표4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채용자격기준도 구체화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일부개정 규정안은 56쪽, 신규조문 대비표는 65쪽, 관계법령은 78쪽, 현행규정은 83쪽, 근로자 동의서는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다음은 74쪽 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안산시 감사관 처분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 수행요건과 자격요건을 각각 별표1호, 별표2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75쪽과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p>
이성운 대표이사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p>○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p> <p>○ 의안 제2023-31호 ‘인사규정 및 임원 인사규정 일부개정 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p>
이사들	○ 없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p>○ 의안 제2023-31호 ‘인사규정 및 임원 인사규정 일부개정 심의 건’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p> <p>○ 의안 제2023-32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p> <p>○ 간사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간사	<p>○ 의안 제2023-32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p> <p>○ 회의자료 107쪽입니다.</p> <p>○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가 조정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23년 8월 30일 공포 및 시행되어 임직원 행동강령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p> <p>○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 추석 기간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 제2023-32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	○ 없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 의안 제2023-32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사들	○ 없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 의안 제2023-32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심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안 제2023-33호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 제2023-33호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161쪽입니다. ○ 안산문화재단 기부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문화 예술사업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사회공헌사업 운영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먼저 163쪽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규정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단체나 개인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운용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기부금’, ‘순수 기부금’, ‘조건부 기부금’, ‘후원회’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의 종류 및 기부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기부금의 종류),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순수기부금과 조건부 기부금이다. 제4조(기부신청) 재단에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약성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 신청의 예

진행 (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p>외) 사항으로 인터넷, 전화, 지로 및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기부 건에 대해서는 당해 기부금 모금 사업의 모금 방식에 따른 별도 양식과 기부 신청 절차로 기부 신청 및 기부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64쪽 안 제6조 내지 제10조의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금과 기부금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 기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단 대표이사로 하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금 접수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2.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수행 및 집행 방법의 적합성 여부 4. 기부금이 재단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5. 기부금의 자금세탁, 증여, 세금 포탈 등 부정적 목적의 기부 여부 6. 기부금의 수혜자 지원에 대한 합당성 여부 7. 기부금 잔액 활용 방안 <p>소관부서는 기부약정서를 접수하면 내부 품의를 거쳐 주관 부서에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 기부채납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각호의 사업 중 동일한 기부 내용, 조건으로 2년 이상 지속된 연례 정기 기부 2. 재단의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한 500만 원 이하의 기부 3. 행사 개최 시 현장 모금된 기부금 혹은 수익금 4. 제5조(기부 신청의 예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 심의위원회 역할과 구성, 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 166쪽 안 제11조 내지 제16조, 기부금 채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이 기부금 채납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기부금의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부금의 공개와 관련하여,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및 사후관리의 의무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하며,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 수입 지출 명세는 재단 회계 규정에 따라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168쪽 안 제17조 내지 제25조까지, 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제2조(목적)에 따라 지역 문화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p>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후원회의 회원은 정기회원과 일시회원으로 구분하며, 재단은 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자문 또는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원제도 관련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후원회 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후원회의 운영 및 후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p>- 이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170쪽 별지 1호 기부약정서, 171쪽 별지 2호 장부가액확인서를 관련 문서 양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p> <p>○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p>
이성운 대표이사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기 이사	○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그 안에 그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경영지원부장	○ 저희가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금은 명칭이 바뀌긴 했는데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예전에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부금법을 벗어난 예외 조항에 관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기부금을 받았을때 특별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요. 향후 이제 재단에서 이러한 기부금이나 모금에 대한 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서 비록 예외 조항 사항이긴 하지만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민화식 이사	○ 이걸 굳이 이번에 만든 이유가 있나요?
경영지원부장	<p>○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내부 품의 결의를 거쳐서 기부금을 받거나 집행했습니다. 제작년에 한번 저희가 기부금 들어온걸 안산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고 말씀 하셔서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적용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이제 좀더 다양하게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집행하거나 쓸 때 좀 더 공정한 절차와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다고 또 하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후원회도 운영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규정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p> <p>○ 기부를 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이제 정리했다 쓰고 그랬는데 좀 제도화해서 이거를 우리가 관리하자 그런뜻으로 새로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p>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김영애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 보면 1항밖에 없거든요 굳이 1안으로.. ○ 제16조 1항 삭제 ○ 제21조 1, 2, 3항을 1, 2, 3호로 변경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경영지원부장	○ 네. 수정하겠습니다.
신영철 이사	○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있나요? 티켓을 할인해 준다건가...
경영지원부장	○ 그런 부분은 지금도 적용되도 있는 부분입니다.
민화식 이사	○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 이거는 자체에서 만든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준칙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 네, 저희가 많은 타 재단을 참고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 의안 제2023-33호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심의 건’에 대하여 ○ 제5조 ①삭제, 제16조 ①삭제, 제21조 ①, ②, ③항을 1, 2, 3호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사들	○ 없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 제2023-33호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심의 건’이 수정의결 되었음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안 제2023-34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비상임 선임직 이사 후보자 추천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 제2023-34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비상임 선임직 이사 후보자 추천 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173쪽입니다. ○ 재단 정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비상임 선임직 이사 의원면직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비상임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을 하였으며, ○ 접수현황은 배부해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가방법은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개별항목 배점 합산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최종 후보자 수는 심사 완료 후 결정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 윤리의식을 갖춘 역량 있는 분이 선임 될 수 있게 공정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p>○ 이사님들께서는 응모한 분들에 대한 심사점수를 매겨 주시고 완료된 분들은 집계를 위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집계 완료 후)</p> <p>○ 이사님들이 선정해주신 2명을 고득점자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p> <p>○ 1번 김00, 2번 김00</p> <p>○ 이렇게 고득점 순 총 2명을 이사장에게 추천하여 이사선임 후보자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p>
이사들	○ 없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	<p>○ 안산문화재단 이사회 선임직 이사 선임 후보자 1번 김00, 2번 김00 2명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p> <p>○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주신 아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p>○ 이번주 금, 토요일 차이코프스키 세계3대 발레 명작에 서울발레시어터만의 색채를 입힌 환상적인 무대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선물이 되어줄 <호두까지 인형>가 준비되어 있습니다.</p> <p>○ 이사님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p> <p>○ 2023년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24년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p> <p>○ 이것으로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제67차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p> <p>○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p>